



KDB생명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험은 "약속의 산업"이며, 대를 물리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긴 약속"이라는데 생명보험의 숭고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KDB생명은 고객님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키는 약속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보험의 가치는 고객님의 어려움에 "큰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객님께 닥칠지 모를 미래의 어려움을 "희망"으로 바꾸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과 행복을 지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KDB생명은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고객님과의 "긴 약속"을 "큰 희망"으로 보답하는 든든한 보험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이해하시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금지급이나 보험료 납입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과구성

쉽게 요약한 보험약관

자주 찾으시는 주요정보만 간략하게 요약하였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보험계약 관련 주요확인사항 (표준약관)

보험계약 관련 교부서류 안내

보험금 청구 안내

주요 민원 사례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약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 본문입니다. 약관 전문

보험용어해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보험금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이 효력을 잃거나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보험계약 관련 주요 확인사항(표준약관)

- ※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관련 표준약관과 함께 기재하였으며, 계약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내용은 표준약관을 기재한 내용으로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약관"에 기재하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표준약관 제 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해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실대로 기재하고 지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주 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u>사 례: 보험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전</u>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 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

-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2.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 17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제 19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

•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각 상품별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 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해 설]········

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관련 교부서류 안내

- ※ '계약 전'과 '계약 후'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교부받은 서류를 확인하시고,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 컨설턴트 또는 KDB생명 고객센터 (1588-4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전 교부서류



2. 계약 후 교부서류



보험금 청구안내

- ※ 위 내용은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페이지(http://www.kdblife.co.kr)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청구방법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컨설턴트/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http://www.kdblife.co.kr)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장해	진단	실손	입원/통원 수술/골절
고객플라자 / 지점방문	•	•	•	•	•
우편 / FAX / 인터넷	•	•	•	•	•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이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 까지 지급지연 이자가 지급되지 않음)



공통 제출서류

보장내역	청구서류	발급처
기본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	KDB생명 양식
	배우자 또는 자녀 보장(종피보험자): 주피보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주민센터
추가	미성년자가 수익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따부모 공동친권행사 배우자 변제일 경우)	주민센터
	대리인 수령시: 위임장(회사양식/인감날인), 수익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익자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센터
	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회사양식/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및 보험회사
	재해 입증서류 예시: -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미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 등 법원분쟁: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자살: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관공서 및 보험회사

[※] 보험금청구서 등 기타 필요서식 다운로드 및 보험금 청구관련 자세한 안내는 KDB생명 홈페이지(http://www.kdblife.co.kr) > 인터넷창구 > 지급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사례 1 | 해지화급금 과소 관련

- 고객은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 B로부터 OO저축보험 가입을 권유받음.
- 보험설계사 B는 OO저축보험은 5년만 납입하면 5년 뒤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은행수익률 보다 높은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
- 이에 A고객은 청약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증권, 약관 등 중요서류를 모두 수령하였으나 보험설계 사 B의 설명만 믿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며, 가입이후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정상 납입함.
-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해지 시 수령가능 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함.

Q 알아두세요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1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관련

- C고객은 보험설계사 D에게 OO건강보험 가입을 제안 받았음.
- 청약하던 중 3~4개월 전 잠깐 혈압이 높아져 검사 등으로 3일정도 입원한 것이 생각나 보험설계사 D에게 확인하였으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여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계약체결.
- 얼마 후 고혈압으로 입원하게 되어 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당하여 민원을 제기함.

Q 알아두세요

보험계약 성립에 있어 청약관련서류의 작성은 본인(계약자, 피보험자)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건강사항 등의 작성도 동일합니다. 보험은 일반 임상의학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위험을 평가하므로, 경미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만약 실수, 고의 등으로 누락할 경우 보험계약은 강제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계약 관련 유의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ㅇ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o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o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 야 합니다.
- ㅇ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드립니다.

저축성 상품

- o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 득세는 소득세법(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향후 관련법 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의 제2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신공시이율(저축Ⅳ)) 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o 만기보험금은 적립액에 적용되는 변동이율(신공시이율(저축Ⅳ)), 보험료에 포함된 부가보험료 규모, 중도인출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2. 해지화급금에 관한 사항

o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 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부가보험료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상품설명서 본문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 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

가. 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 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나. 고지의무 위반 효과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드립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나.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나'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약철회

- 가.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
- 나.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가'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라.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마. '가'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경약철회 신청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KDB생명 언더라이팅팀 (전화: 1588-4040)

5. 계약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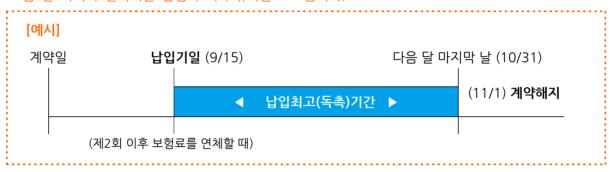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8
제1조 (목적)	18
제2조 (용어의 정의)	18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1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1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2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2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22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22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23
제10조 (주소변경통지)	23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24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24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4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24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5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26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6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26
제17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27
제18조 (청약의 철회)	27
제1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9
제20조 (계약의 무효)	30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30
제22조 (보험나이 등)	31
제23조 (계약의 소멸)	32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2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2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3

제26조 (보험료의 자농대출납입)	34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4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5
제29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35
	2.6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36
제3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36
제31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36
제3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7
제33조 (해지환급금)	37
제34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38
제35조 (보험계약대출)	38
제36조 (배당금의 지급)	38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39
제37조 (분쟁의 조정)	39
제38조 (관할법원)	39
제39조 (소멸시효)	39
제40조 (약관의 해석)	39
제4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39
제4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9
제43조 (개인정보보호)	40
제44조 (준거법)	40
제4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0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42
(부표 2) 재해분류표	43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33조 제2항 관련)	45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재해분류표"(부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 위를 받은 자
 -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라.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지

- 나. 신공시이율: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kdb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라.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마. 외부지표금리: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바. 보험계약대출이율: 신공시이율(저축IV)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대통령령 제2839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해당일이 없는 달의 예시】

계약일: 2017년 3월 31일일 때, 2017년 4월의 월계약해당일은 2017년 4월 30일로 함
→ 2017년 4월에는 계약해당일(31일)이 없으므로,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

- 5. 기타 용어의 정의
 - 가.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하며, "보장계약보험료(이하 "위험보험료"라고 합니다)"와 "적립계약보험료"를 합하여 "기본보험료"라 합니다.

- (1) 보장계약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2) 적립계약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나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다. 부가보험료
 - 이 상품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을 말합니다.
- 라. 위험보험료

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며, 기본보험료에서 차강하여 사용합니다

마. 적립액

기본보험료의 적립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를 신공시이율(저축IV)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만기보험금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또는 제23조(계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

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의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재산상 지위를 상속받는 자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보험료 납입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등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계약자의 책임을 공동으로 집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상 "고지의무"】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턘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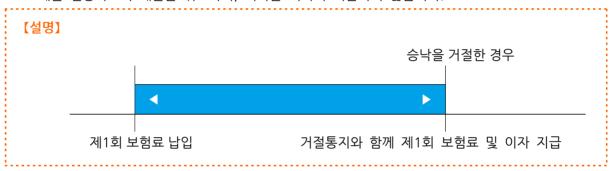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① 계약자는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위험보험료와 적립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청약한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

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



-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유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 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 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 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적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기본보험료
 - 2.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보험료 납입기간
 - 3. 계약자
 - 4.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 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기본보험료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기본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기본보험 료를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

- ④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이미 경과된 보험료 납입 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 등의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 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 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예1) 2016년 4월 13일에 가입할 경우 예2) 2016년 3월 13일에 가입할 경우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7년 6월 11일

☞ 보험나이 28세

2016년 3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7년 5월 11일

☞ 보험나이 27세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설명】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 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보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의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제23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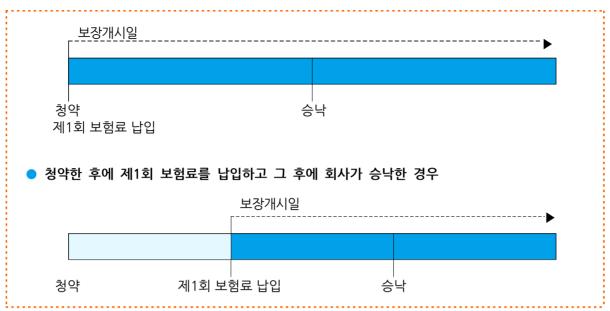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②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5년납 미만은 당월분을 제외한 11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 5년납 이상은 당월분을 제외한 6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선납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저축IV)로 적립하여 당해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 ④ 선납보험료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⑤ 특약보험료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와 동일한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약의 적용 이율로 할인(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 한함)하여 제2항의 선납보험료와 함께 영수합니다.

제26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인)

- ① 계약자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 경우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 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 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 ② 회사가 제1항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된 기본보험료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9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 법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절차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화급금 등

제3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 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명]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시]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3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해지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신공시이율(저축IV)(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75%를 최저보증이율로 합니다)는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신공시이율(저축IV)에 따라 적립되며 신공시이율(저축IV)가 0.5%인경우(최저보증이율이 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75%일 경우), 적립액은 신공시이율(저축IV)(0.5%)가 아닌 최저보증이율(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75%)로 적립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4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계약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저축IV)(최저보증이 율은 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75%를 적용)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신공시이율(저축IV)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일반계정 신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신공시이율(저축IV)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신공시이율(저축IV)의 공시】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dblife.co.kr)의 "상품공시실" 내 "상품 목록"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신공시이율(저축IV)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 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에서 공시합니다.

제35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적립액 반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

제43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4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만기보험금 (제3조 제1호)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적립액
사망보험금 (제3조 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기본보험료 100% + 사망당시 적립액

- (주) 1. "적립액"이라 함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5. 기타 용어의 정의 마. 적립액」에서 정한 적립액을 말합니다.(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2. 신공시이율(저축IV)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저축IV)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따인분류상의(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한국표준질병따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번적 개입" 중 번적 처형(Y35 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따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8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대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대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3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적 립 이 율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사망보험금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제3조 제2호)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 지의 기간	1년이내: 신공시이율(저축Ⅳ)의 50% 1년초과기간: 1%
및 해지환 급금 (제33조 제1항)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만기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신공시이율(저축Ⅳ)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39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제1조 (목적)	3
제2조 (용어의 정의)	3
게2소 (6의 6의)	3
제2관 보험금의 지급	6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6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6
제5조 (보험금 등의 청구)	6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7
제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7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0
	8
제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8
제9조 (피보험자의 범위)	8
제10조 (특약의 무효)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9
세 미소 (극확대용의 단경 등)	9
제4관 보험료의 납입	9
제12조 (특약의 보장개시)	9
제13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9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10
제1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0
제15조 (해지환급금)	10
제1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1
제6관 기타사항	11
제17조 (소멸시효)	11
제17도 (오늘지요) 제18조 (전환전계약 보통보험약관규정의 준용)	11
에 IO포 (인천인계곡 포증포함국한 II 중취 단형)	1 1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2
(부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6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 관련)	14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전환할 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전환할 때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가입나이 또한 전환할 때의 나이를 적용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나.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 위를 받은 자
 -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이고, 복리는 (워금+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 나.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다. 외부지표금리: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 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 4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대통령령 제2839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5. 기타 용어의 정의
 - 가. 부가보험료
 - 이 특약에 부가된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을 말합니다.
 - 나. 적립액
 - 이 특약의 보험료를 신공시이율(연금IV)로 전환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 다. 전환일시금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전환전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주계약의 전부" 및 "특약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 급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계약대출 상환 후의 금액으로 합니다. 전환 전계약의 전환일시금을 이 특약의 기본보험료로 하며, 신공시이율(연금IV)로 전환일부터 적립됩니다.

- 라. 보험기간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다음에서 정한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 (1)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2)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 (3)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종신연금형】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확정연금형]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보험기간(확정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상속연금형】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연금으로 받고, 피보험자가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상속자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다만,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에 살아있을 때(다만, 확정연금형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매년 계약해 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표"(부표 1 참조)에 정한 연금 지급형태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을 매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표" (부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연금지 급형태별 지급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5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 등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계약자로 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계약은 "전환전계약"이라 합니다)
- ② 회사는 전환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계약자는 전환시점에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다음을 결정하여 야 합니다.
 - 1. 연금지급방법: 정액형, 체증형(5%체증, 10%체증)
 - 2.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10년 / 20년 / 100세 보증지급형, 금액보증형)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상속연금형
-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잔여 연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피보험자의 범위)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전환전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할 경우: 전환전계약의 보험수익자
- 2.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할 경우: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제10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
 - 2. 연금개시나이, 연금지급방법, 연금지급형태
 - 3. 기타 특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 전의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연금개시나이, 연금지급방법, 연금지급형태는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2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전환일부터 시작됩니다.

제13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지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은 연금개시일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해지화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2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공시이율(연금IV)는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하며, 신공시이율(연금IV)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연금IV)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신공시이율(연금IV)에 따라 적립되며 신공시이율(연금IV)가 0.5%인경우(최저보증이율이 전환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75%일 경우), 적립액은 신공시이율(연금IV)(0.5%)가 아닌 최저보증이율(전환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75%)로 적립됩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 10

제1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의 적립액 및 연금액 계산에 대한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연금IV)(최저 보증이율은 전환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 과는 연복리 0.75%를 적용)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신공시이율(연금IV)는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 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일반계정 신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 감하여 결정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신공시이율(연금IV)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신공시이율(연금IV)의 공시】

이 특약에 적용되는 신공시이율(연금IV)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에서 공시합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17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전환전계약 보통보험약관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전계약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전계약의 보통보험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10년 보증지급형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 한 연금액지급 (10년/20년/100세 보증지급) - 정액형 - 체증형(5%10년체증, 10%10년체증)
	20년 보증지급형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매 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종신	100세 보증지급형		
연금형 (제3조)	금액 보증지급형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매 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이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보다 많은 경우는 일시지급금 없음)
확정연금형 (제3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매 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 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 급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 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동안 지급
상속연금형 (제3조)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매 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매년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 또한 사망시 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

- (주) 1. "적립액"이라 함은 전환한 보험료를 신공시이율(연금Ⅳ)로 전환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 2. 연금액은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연금IV)가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3. 종신연금형의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 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4. 종신연금형의 10년 보증지급형, 20년 보증지급형 또는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10년, 20년 또는 100세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각각의 확정연금 지급기 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각각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 12

-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IV)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IV)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8.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은 10년/20년/100세 보증부 체증형으로, 10차년도까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율(5%/10%)로 체증하여 지급한 후,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액을 해당년도의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공시이율(연금IV)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년도 연금액에 체증율(5%/1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변경된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재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9. 상속연금형의 경우 초년도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의 신공시이 율(연금IV)로 계산한 금액을 드리고 2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경과 1년 동안의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10.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 11.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신공시이율(연금IV)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12.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각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

13

(부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6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적 립 이 율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신공시이율(연금Ⅳ)
연금 (제3조)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이내: 신공시이율(연금Ⅳ)의 50% 1년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1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신공시이율(연금Ⅳ)의 50% 1년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한 이자 를 지급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17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제1조 (목적)	3
제2조 (용어의 정의)	3
제2관 보험금의 지급	7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7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7
제5조 (보험금 등의 청구)	7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8
제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8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8
제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9
제9조 (피보험자의 범위)	9
제10조 (특약의 무효)	9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0
제4관 보험료의 납입	10
제12조 (특약의 보장개시)	10
제13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1
게드라 게야이 웬가 미 웨기하다그 드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11
제1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1
제15조 (해지환급금)	11
제1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1
제17조 (중도인출)	12
제6관 기타사항	13
제18조 (소멸시효)	13
제19조 (전환전계약 보통보험약관규정의 준용)	13
· # 19 4 (CC C: #7 40467 CH 04 CO)	15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4
(부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6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 관련)	16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전환할 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전환할 때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가입나이 또한 전환할 때의 나이를 적용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나.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 위를 받은 자
 -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 나.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다. 외부지표금리: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 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대통령령 제2839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5. 기타 용어의 정의
 - 가.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1) 기본보혐료 전환전계약의 전환일시금을 말한다.
 - (2) 추가보혐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전환일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만료 2년전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나. 추가보험료 납입한도
 - (1)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200%
 - (2) 매년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 × 2 ×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다만, 경과년수는 가입할 때를 1년으로 합니다.
 - (3) 중도인출이 있으면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 다 부가보험료

[예시 1]

일시납 기본보험료 1,000만원의 경우

→ 계약 경과기간 2개월(2회 납입) 시점의 추가보험료 납입 가능 한도 : 1,000만원 × 10% × 2 × 1(경과년수) = 200만원

【예시 2】

일시납 기본보험료 1,000만원,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 100만원인 경우

→ 계약 경과기간 15개월(15회 납입) 시점의 추가보험료 납입 가능 한도 : 1,000만원 × 10% × 2 × 2(경과년수) - 100만원 = 300만원

이 특약에 부가된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을 말합니다.

라. 적립액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를 신공시이율(연금IV)로 전환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중도인출의 지급이 있을 때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하며,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마. 전환일시금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전환전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주계약의 전부" 및 "특약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 급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계약대출 상환 후의 금액으로 합니다. 전환 전계약의 전환일시금을 이 특약의 기본보험료로 하며, 신공시이율(연금IV)로 전환일부터 적립됩니다.

바. 보험기간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다음에서 정한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전환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 (2)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가)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나)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 (다)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종신연금형】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확정연금형]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보험기간(확정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상속연금형]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연금으로 받고, 피보험자가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상속자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다만,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에 살아있을 때(다만, 확정연금형은 연금개시 후보험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표"(부표 1 참조)에 정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을 매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 이전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는 "보험 금 지급 기준표"(부표 1 참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5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 등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계약자로 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계약은 "전환전계약"이라 합니다)
- ② 회사는 전환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계약자는 전환시점에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다음을 결정하여 야 합니다.
 - 1. 연금지급방법: 정액형, 체증형(5%체증, 10%체증)
 - 2.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10년 / 20년 / 100세 보증지급형, 금액보증형)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상속연금형

-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거나,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4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피보험자의 범위)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전환전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할 경우: 전환전계약의 보험수익자
- 2.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할 경우: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제10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
 - 2. 연금개시나이, 연금지급방법, 연금지급형태
 - 3. 기타 특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 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연금개시나이, 연금지급방법, 연금지급형태는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2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전환일부터 시작됩니다.

10

제13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지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은 연금개시일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2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공시이율(연금IV)는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하며, 신공시이율(연금IV)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연금IV)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신공시이율(연금IV)에 따라 적립되며 신공시이율(연금IV)가 0.5%인경우(최저보증이율이 전환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75%일 경우), 적립액은 신공시이율(연금IV)(0.5%)가 아닌 최저보증이율(전환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75%)로 적립됩니다.

제1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의 적립액 및 연금액을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연금 IV)(최저보증이율은 전환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75%를 적용)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신공시이율(연금IV)는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일반계정 신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신공시이율(연금IV)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신공시이율(연금IV)의 공시】

이 특약에 적용되는 신공시이율(연금IV)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 시실" 내 "적용이율"에서 공시합니다.

제17조 (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전환일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이내),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의 50%와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액과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후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회 인출시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2014년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이 됩니다.

- ② 중도인출은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가능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후의 해지환급금이「기본보험료의 30%해당액」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은 전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예시】

- 예1)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 700만원,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액 3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 1회 인출시 700만원의 50%와 3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650만원이나, 납입한 보 험료 총액 한도에 의하여 400만원까지 인출가능
- 예2)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 3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600만원일 경우
 - → 1회 인출시 300만원의 50%는 150만원이나, 인출 후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이 기본보험료의 30% 해당액보다 작지 않아야 함으로 120만원까지 인출가능
- ④ 중도인출 이후 연금개시 전 적립액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개시 전 적립액 또는 해지환급금이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18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전환전계약 보통보험약관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전계약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전계약의 보통보험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보 장 기 간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연금 개시후 보험 기간 중	종신 연금형 (제3조)	10년 보증지급형 20년 보증지급형 100세 보증지급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 산한 연금액지급 (10년/20년/100세 보증지급) - 정액형 - 체증형(5%10년체증, 10%10년체 증)
		금액 보증지급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 적립 액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이미 지급되어 진 연금총액이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 보다 많은 경우는 일시지급금 없음)
	확정연금형 (제3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 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동안 지급
	상속연금형 (제3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매년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 또한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

- (주) 1. "적립액"이라 함은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를 신공시이율(연금IV)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중도인출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인출액을 차감하며,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 2. 연금액은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연금IV)가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3. 종신연금형의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 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4. 종신연금형의 10년 보증지급형, 20년 보증지급형 또는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10년, 20년 또는 100세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

- 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각각의 확정연금 지급기 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각각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IV)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IV)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8.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은 10년/20년/100세 보증부 체증형으로, 10차년도까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율(5%/10%)로 체증하여 지급한 후,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액을 해당년도의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공시이율(연금IV)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년도 연금액에 체증율(5%/1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변경된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재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9. 상속연금형의 경우 초년도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의 신공시 이율(연금IV)로 계산한 금액을 드리고 2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 기준으로 경과 1년 동안의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10.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 11.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신공시이율(연금IV)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12.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13.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각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부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6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적 립 이 율	
연금 (제3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신공시이율(연금IV)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이내: 신공시이율(연금Ⅳ)의 50% 1년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1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1년이내: 신공시이율(연금Ⅳ)의 50% 1년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한 이자 를 지급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18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3
제2조 (가입대상자)	3
제3조 (가입한도 등)	3
제4조 (세제혜택)	3
제5조 (준용규정)	4

비과세종합저축특약 2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주계약의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조 (가입대상자)

① 이 특약의 계약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자로 하며,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와 같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자】

- 1. 65세 이상인 거주자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65세"를 "62세"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65세"를 "63세"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65세"를 "64세"로 봅니다.)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 증화자
-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하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② 이 특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제3조 (가입한도 등)

- 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납입할 보험료 총액은 모든 금융기관 및 공제회의 비과세종 합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을 포함하여 1명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주계약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 등은 1명당 가입한도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③ 비과세종합저축계약금액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합계액 중 일부만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세제혜택)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및 만기보험금(배당금 포함) 등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특약 3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비과세종합저축특약 4





목차

제1관 보험금의 지급	3
제1조 (보험금의 청구)	3
제2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3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3
제3조 (적용대상)	3
제4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3
제3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3
제5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4
제6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4
제4관 기타사항	4
제7조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규정의 준용)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

제1관 보험금의 지급

제1조 (보험금의 청구)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 (적용대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제4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3조(적용대상)의 주계약 및 특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3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3

제5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다만, 장기요양상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이어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4관 기타사항

제7조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4